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5. 10. 14.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613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 보장과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 제공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지정위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운영·관리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를 해당 시설의 수탁자로 지정·위탁함으로써, 시설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
-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및 재산관리, 안전관리 등

○ 위탁시설 개요

- 대상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소재지	규모(면적)	종사자수	이용인원	지원시설
남부순환로391길 25, 2층 (강남성은교회)	226.8㎡	3명 (시설장 1명, 직원 2명)	1일 150명 내외	실내 놀이공간, 안내데스크, 수유실, 화장실

○ 위탁기간 : 10년(2025 ~2035) ※ 위수탁협약 체결시부터

○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수의계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 소요예산 : 연간 168,600천원 (시 128,838천원, 구 39,762천원)

- 지출 : 168,600천원, 수입: 37,325천원

- 산출근거 : 2025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천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보 험 료	기 본 급		99,636	59.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제 수 당	시간외근무수당	6,895	4.0	
			정액급식비	4,680	2.7	
			관리자수당	2,400	1.5	
			가족수당	1,440	0.9	
			명절휴가비	9,964	5.8	
		퇴직적립금		9,588	5.6	
		기타(인건비 인상분 등)		1,727	1.1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4,079	2.5	
			국민연금보험료	5,178	2.9	
			산재보험료	760	0.5	
			고용보험료	1,324	0.8	
			장기요양보험	529	0.3	
	소 계		148,200	87.6		
	② 운 영 비 ~ 경 비 ~	국내여비		120	0.1	
		의약품구입비		180	0.2	
		사무용품비		600	0.4	
		소규모수선비		540	0.3	
		카드단말기 수수료		120	0.1	
		사무기기 렌탈비		3,600	2.1	
정수기 렌탈비		600	0.4			
홍보비		600	0.4			
방역소독비		480	0.3			
기타경비		360	0.3			
소 계		7,200	4.6			
③ 사 업 비		13,200	7.8			
지출 합계(A=①+②+③)			168,600	100		
수 입	④ 입장료·이용료		37,325	100	-이용료(3,000원)×월 이용인원 (1,728명)×12월×60%	
수입 합계(B=④)			37,325	100		
위탁비용(A-B)			131,275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라.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세부운영)

**제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세부운영)**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등) 및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제12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놀이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을 강남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③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체결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위탁기간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및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II. 주요사항의 검토

### 가.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조성 배경

- 서울시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계절 및 기후, 경제적 부담에 제약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치구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나. 민간위탁 적정성 등 검토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및 재산관리, 안전관리 등)이고, ▶ 수탁자는 공간을 무상 제공한 강남성은교회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 위탁 기간은 10년(2025 ~ 2035)으로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대상 사무 해당 여부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형 키즈카페는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실내에 조성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등)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할 수 있음.
  -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특성상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시설장과 돌봄요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관내 영유아 관련 시설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이라는 점과 직영에 따른 행정력 부담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 됨.
-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위탁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민간위탁 조례

를 두고 있음.

-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민간위탁 조례 제8조), 위탁기간의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민간위탁 조례 제20조).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2025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이하 “서울시 매뉴얼”이라 한다)에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설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정위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5. 9.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한 수의계약(지정위탁) 및 공간 무상사용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는 근거가 마련됨.
  - 따라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공간을 무상 제공한 강남성은교회를 공간 무상사용 기간(10년)\* 동안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것은 위와 같은 근거에 따른 것임. 공간 무상 제공 주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탁 예정 기관이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 참고: 서울형 키즈카페 강남구 대치1동점 공간 무상제공에 따른 사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서울시 매뉴얼에서는 ‘시설 투자 후 의무 사용기간 10년’을 권고하고 있음.

### Ⅲ. 종합의견

- 종합하자면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의 경우 공간 무상 제공이라는 특수성과 시설 관리 운영의 책임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서 살펴본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키즈카페 조성 공간을 무상 제공한 자를 무상 제공 기간 동안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 다만, 본 시설은 11월경 개소 예정으로 시설 설치하는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인건비 구비 부담(센터장 인건비 시30: 구70)이 있어 매년 구비 예산 편성

이 필요하고, 공간 무상 제공에 따른 지정위탁은 대상지 선정 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임에도 수탁예정기관에서 2025. 9. 29.자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공고를 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동의안 제출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임. 이는 의회 심의권 존중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인바 구의회 당연 동의를 전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이 다른 민간 유희부지 발굴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키즈카페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끝.